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0나220462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0나22046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단2193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치오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준

변론종결 2022. 5. 10.

판결선고 2022. 6. 14.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단2193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취소. 4천만 원 및 그 중 2천만 원에 대하여 2009. 12. 17. 이후,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하여 2010. 4. 20. 이후 지연손해금.

이 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문 3쪽 16줄과 20줄 ‘2019.’를 ‘2009.’로 고치고,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원고는 2009. 12. 16.과 2010. 4. 19. 피고에게 송금한 합계 4천만 원은 이 사건 토지부분 매매대금이고, 당시 원고 쪽 매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피고의 배우자 C에게 매도인인 I 쪽에 전달해 달라고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주고받아 왔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 법원 2021. 11. 3. 선고 2019가단14486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 및 이 사건 토지부분을 매수하게 된 동기, 구체적인 과정과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그 4천만 원이 이 사건 토지부분 매매대금이라거나 원고 쪽 매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C에게 매도인인 I 쪽에 전달해 달라고 의뢰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그 주장을 전제로 하는 기망 또는 착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토지부분의 매도인이 I 쪽이 아니라 피고의 배우자 C이라면, C이 갑2(합의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부분 등을 취득한 것을 대가 없이 무상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토지 및 그 부근 토지들의 위치와 형상, 이용 상태와 개발 계획, 권리관계 등을 고려할 때 C이 매수인인 원고 쪽에 갑2(합의약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망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원고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착오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황현찬, 판사 오성우